

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99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7.

발의자 : 이만희 · 서천호 · 구자근  
김기웅 · 엄태영 · 박형수  
유용원 · 강선영 · 김대식  
곽규택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 
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러  
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지  
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  
음.

이에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 
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2  
항).

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